

창원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0나656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0나65606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1. 3 선고 2019가단103839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강경철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김혜란

변론 종결 2021. 9. 17.

판결 선고 2021. 12. 17.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1. 3. 선고 2019가단10383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와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8. 10. 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9.

4. 4. 접수 제59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43,751,11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751,1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71,414,44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414,4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2019. 3. 7. 기준 제1목록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470,141,050원(피고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제1목록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한 결과의 평가액 515,087,050원에서 경남 함안군 P 지상 건물의 가액 44,946,000원을 제외한 금액)이고, 2020. 4. 30. 기준 제2목록 각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2억 8,570만 원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의 "2) 청구원인"을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 행부터 제8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는, 망인이 ① B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치아보험 등에 가입하여 보험료 13,551,100원을 납부하였고, ② 일부 다른 보험의 경우에는 B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중도에 보험계약자를 망인의 손자인 I과 G로 변경하여 B을 대신하여 보험료 35,970,062원을 납부하였는바, 이처럼 망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B에게 합계 49,521,162원을 증여하였으므로, 그 증여 금액은 B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9, 30,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12. 5.경부터 2018. 5.경까지 B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Q 주식회사의 보험 1건, R 주식회사의 보험 3건, S 주식회사의 보험 3건의 보험료를 망인의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한 사실, 망인이 B을 위하여 대납한 보험료 합계는 13,551,100원[= (41,900원 × 28회) + 475,000원 + 350,000원 + 5,842,900원 + 210,000원 + 3,100,000원 + 2,4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B이 망인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증여를 받음으로써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계산의 편의상 보험료의 최종 대납일인 2018. 5.경 특별수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위 ② 주장에 관하여는,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B이 보험계약자로 가입하였던 각 보험들의 보험계약자 명의가 I 또는 G로 변경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료 35,970,062원의 수증자는 보험계약자로 명시된 I과 변동여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금액이 B에게 증여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피고가 망인을 약 20년간 부양하였으므로, 최소 50% 이상인 피고의 기여분이 B의 구체적 상속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중에 피상속인을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분을 산정할 때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기여분 산정에 관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와 관련한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망인의 상속재산 및 B의 특별수익액을 반영하여 B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178,796,937원[= {(제1목록 각 부동산 가액 470,141,050원 + 제2목록 각 부동산 가액 285,700,000원 + B의 특별수익 13,551,100원) × B의 법정상속분율 1/4} - B의 특별수익 13,551,100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한편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라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채무자로서 L주식회사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2019. 5. 10. 피담보채무 70,042,230원을 모두 변제하여 선행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하여 피고가 선행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B은 피고의 면책적 채무인수로 자신의 상속채무를 면제받아

17,510,557원(= 70,042,230원1) × 1/4)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B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1/4 지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감소되었고, B이 재산분할결과로 얻은 이익은 17,510,557원에 불과하여 B의 구체적 상속분 178,796,937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부터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제2목록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선행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222,190,947원 및 그중 37,553,670원에 대하여 2013. 1. 3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9. 17.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4 지분 중에서 B이 이 사건 분할협의로 처분한 B의 구체적 상속분은 178,796,937원이다[제1목록 각 부동산의 1/4 지분 가액이 117,535,262원2) 이므로, 제2목록 각 부동산 중 B의 구체적 상속분은 제2목록 각 부동산의 1/4 지분3) 보다 적은 61,261,674원4) 상당이다]. B이 이 사건 분할협의로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제2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제2목록 각 부동산에 관한 B의 구체적 상속분 61,261,674원 상당 중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43,751,117원(= 61,261,674원 - 말소된 선행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B의 지분에 해당하는 17,510,55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3,751,1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6, 17행의 각 "53,914,443원"을 "43,751,117원"으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의 실질은 상속포기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의 분배를 목적으로 한 공동상속인들 간의 일종의 계약인 반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으로서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불요식행위인 반면 상속포기는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요식행위인 점 등으로 볼 때 양자는 그 요건과 효과, 법적 성질이 엄격히 준별되는 것이어서 어떤 구체적 사안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은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사전 증여를 받은 반면 피고는 20년 이상 망인을 부양하였음에도 아무런 증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이가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B에게 아파트 매수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이 B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금액이 13,551,1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할협이가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악의가 여전히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 며느리인 F에 대한 구상금 채무 617,810,210원, 제2목록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 70,042,230원,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4,000만 원,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5,000만 원까지 총 77,852,440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더 많았는데, B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B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선 망인이 사망 당시 F에게 617,810,210원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2,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7. 5. 8. T조합으로부터 망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F 소유인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T조합, 채권최고액 8억 2,000만 원, 채무자 망인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F는 2015. 7. 24. 위 토지를 담보로 T조합으로부터 6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T조합에게 망인 명의의 위 대출채무 원리금 합계 617,810,210원(= 323,582,244원 + 3,597,490원 + 290,630,476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과 F 중 누가 실제 채무자로서 위 대출을 받았는지 불명확하고, F가 2015. 7. 24. 이후 망인에게 구상채권을 주장했다거나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에 공동상속인들이 F의 구상채권까지 고려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망인을 대신하여 망인의 대출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망인이 F에게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설령 망인에게 F에 대한 구상채무가 존재하였더라도 상속채무는 금전채무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사해행위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어느 면으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망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가액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수익자가 부담하는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5)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양상익

판사전보경

판사김희수

별지

- 1) 상속개시 당시(2018. 10. 7.)의 피담보채무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인 2019. 5. 10. 당시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담보채무로 보고 계산한다.
- 2) 제1목록 각 부동산 가액 470,141,050원 $\times$ 1/4
- 3) 가액은 71,425,000원(= 제2목록 각 부동산 가액 285,700,000원 $\times$ 1/4)
- 4) 구체적 상속분 178,796,937원 - 제1목록 각 부동산의 1/4 지분 가액 117,535,262원
- 5)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